

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

1989년 1월 5일 공포·시행

I. 총 관

1. 개정배경

폐수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방지시설을 가동치 않거나, 비밀배출구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바로 조업정지토록 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고, 폐수배출량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자동 설정하여 대형 배출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현재 날로 심각화, 다양화 해 가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 하고자 함.

2. 개정 목적

-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 근절
- 기타 누락되어온 환경관리상의 제도적 모순점 해결

3. 주요 개정내용

- 행정처분기준의 강화
 -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 근절 및 중금속 배출업소에 대한 규제강화
- 수질배출허용기준의 규모별 차등화
 - 대형 배출업소에 대한 규제강화로 농도 규제기준의 모순점 제거
- 호소 환경기준 추가 설정
 - 호소의 부영양화 방지를 위하여 총인 및 총질소의 환경기준 설정
- 대기배출시설의 추가
 - 카본블랙 또는 카본제품 제조시설, 착화탄 제조시설, 석면·암면 및 유리섬유 제조시설, 아스콘 제조시설

4. 추진 일정

- 관계부처 협의 : '88. 9.30 - 10.25
- 법제처 심의 : '88.11. 1 - 11.29
- 공포·시행예정일 : '89년 1월 5일

II. 행정처분기준 개정안

1. 개정안의 기본방향

1.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 근절

가. 현 황

방지시설·가동 기피, 무단방류 등 반사회적인 고의성 비정상가동에 대한 제재조치 경미.

- 고의성 위반 : 경고 → 허가취소
- 고장·과실 위반 : 개선명령 → 조업정지명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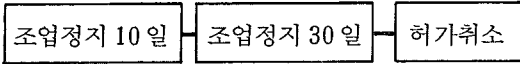
나. 문 제 점

고의성위반의 경고로 끝나고 실제 허가취소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적어(예컨대 무단방류로 1년내 2번이상 적발되는 경우 극소) 최소위반부터 개선명령 및 부과금 처분을 당해야 하는 고장·과실로 인한 위반의 경우와 비교하여 행정처분의 형평성 상실.

다. 개정안의 기본방향

- 1) 방지시설의 가동기피, 무단방류 등 고의성 비정상가동.
 - 기본적으로 부과금제도에 의한 문제 해결을 지양하고 조업정지,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등 직접규제 위주로 대처
 - 처분기준을 최대한 강화하여 경고없이 1차 위반시부터 조업정지 등의 조치 제도화

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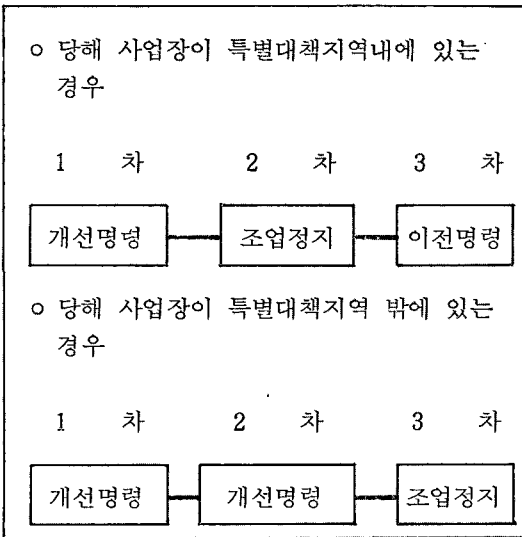


2) 방지사설의 고장·결합 등으로 인한 불
과피한 비정상 가동

○ 기본적으로 부과금제도의 운용을 강화함
으로서 단속이전의 자진신고 관행을 확립하고,
고장 및 결합의 신속한 시정을 강력하게 유도

○ 1차, 2차 위반시는 개선명령, 3차 위
반시는 조업정지처분 등의 현행기준 중심의 체
제를 유지하되, 개선명령 반복 등의 사례를 시
정기 위하여 개선명령 이후의 사후관리 강화로
완벽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반회수
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조업정
지 등의 강력한 규제조치 발동 기회 확대.

현행체제



2.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

가. 위반회수 적용기간 확대

현행

위반수를 산입하는 기간이 당해 위반사항
이 있는날 이전 1년간으로 한정되어 있음.

문제점

○ 1업소당의 지도·점검회수가 연간 2 -
3회에 불과 함으로 실제로 2차, 3차 위반시
의 강화된 처분기준 적용사례 희소

○ 따라서 1차 위반시의 개선명령만 되풀
이 되는 사례 빈번 예상.

개정안

○ 위반회수를 산입하는 기간을 현행 1년
에서 2년으로 확대

나. 위반회수 산정범위 확대

현행

○ 같은 목의 위반사항일 경우만 위반회수에
산입

[예] 처분기준 1호(비정상가동을 한경
우)

- 가목 : 처리약품 불투입
- 나목 : 비밀배출구 배출
- 다목 : 오염물질 회석

문제점

위반회수의 불합리한 축소 산정

개정안

같은 호의 위반사항일 경우는 목에 관계
없이 위반회수에 산입

다. 각종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

현행

개선·조업정지·이전·폐쇄명령 등의 행
정처분 불이행시의 행정상 제재조치 부재.

개정안

각종 명령의 불이행시 5일간의 경고 기
간을 두어 1차 경고처분후 동 기간내에 시정되
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토록 명문화.

라. 조업정지기간의 명시 및 사후관리의 제
도화

현행

○ 조업정지기간이 개선완료일까지로 막연
히 규정되어 있어 조업정지처분의 개시일과 종
료일이 불명.

○ 따라서 조업정지처분 이행여부에 대한
사후관리 부실

개정안

○ 처분서에 조업정지 개시일과 종료일을

명시

○ 개선완료예정일이 실제 완료일과 상 위 있을 것임이 확인될 때는 정정 처분토록 함.

3. 일부규제대상항목의 행정처분기준 누락보완
현 행

배출시설 설치허가는 득하였으나 검사 및 적합판정 (배출시설 조업허가 상당) 을 받지 않고 조업을 개시한 경우의 행정상 제재조치 부재

문 제 점

불량 방지시설 설치 및 방지시설 운영의 부실화 초래

개 정

적합판정을 받지않고 조업개시한 사실 확인 즉시 1 차로 경고처분을 행하고 경고처분후 5 일 이내에 적합판정 신청 절차를 취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

분 야	현 영	개 정 안	개 정 사유
1. 수질환경기준	○ “하천 및 호소” 수질 환경기준을 “통일관” 에 규정	○ 호소의 경우 환경기준을 하천과 분리하여 별도 설정하고 총인 및 총질소에 관한 기준을 신규로 설정	○ 호소의 특성인 부영 양화에 대한 항목중 총인 (T - P), 총 질소 (T - N) 의 환경기준을 추가 설정
2. 수질배출허용 기준의 규모별 자동화 - BOD·COD· SS 의 배출 허용기준	○ 폐수배출규모에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기준 설정기준 청정지역 : 50 ppm 이하 가 지역 : 110 ppm 이하 나 지역 : 150 ppm 이하 다 지역 : 200 ppm 이하 특례지역 : 300 ppm 이하	○ 폐수배출 규모별 배출허용 기준 의 차등 설정	1. 수질악화의 주요원 인인 대형업소에 대한 규제강화 2. 공단폐수처리구역 및 농공지구 (특 례지역 지정) 사 업장에 대한 규제 강화
		3 천톤 / 일 이상 50 ppm 이하 80 ppm 이하 100 ppm 이하 -	
3. 배출시설대상 추가	(신 선)	○ 대기배출시설 추가 - 의약품제조시설 - 카본블랙 또는 카본제품 제조 시설 - 착화탄 제조시설 - 아스콘 제조시설 (시설용량이 10 톤 / 시간이하인 이동식을 제외) - 석면·유리섬유제조시설 ○ 수질배출시설추가 - 식료품제조시설중 침지시설	○ 대기·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을 신규로 배출시설에 포함 시킴.
4. 배출시설대상 확대 1) 축산시설	○ 먼지기준만 채택 “ 예 ” : 돈사시설의 경우	○ 먼지기준에 두수기준 추가 “ 예 ” : 돈사시설의 경우	○ 규제대상, 축산폐수 배출시설 해당범위

분 야	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2) 기타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반지역 : 면적 1,400㎡ 이상 • 특별청소지역 : 면적 700㎡ 이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정시설과 일반시설로 구분하여 배출시설 대상에 포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정시설 : 특정유해물질 및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폐수배출량 0.1㎡/시간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시설 - 일반시설 : 특정유해물질 및 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1㎡/시간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시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반지역 : 면적 1,400㎡ 이상 또는 사육두수 1,000 두 이상 • 특별청소지역 및 상수보호구역등 : 면적 700㎡ 이상 또는 사육두수 500 두 이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수보호구역 등에서는 배출시설 해당 범위 확대 (단서 신설) - 특정시설 : (현행과 같음) 단, 상수보호구역등에서는 폐수배출량 0.2㎡/일 이상 - 일반시설 : (현행과 같음) 단, 상수보호구역 등에서는 폐수배출량 2㎡/일 이상 	<p>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돈사 : 현재 전체의 30%만 해당 • 우·미사 : 현재 전체의 7%만 해당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수원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보호구역에서의 배출시설 해당 범위 확대 (현행 기준보다 약 4배 강화)
5. 배출시설대상 축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X-Ray 필름현상 시설 - 배출시설 해당규모 : 1세트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배출시설 해당규모 : 2세트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량 배출시설 과잉규제로 인한 민원해소 및 행정력 낭비 제거
6. 방지시설대상 확대	(신 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질방지시설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축시설 - 산화, 환원시설 - 침전물 개량시설 	
7.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열공급시설, 소각시설 및 시멘트 소성로에 대해서만 배출허용기준 적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모든 일산화탄소 배출시설에 적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산화탄소로 인한 오염규제 강화
8. 시험가동기간 연장 (생물화학적 처리 시설은 제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험가동기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질 : 20 일 • 대기 : 10 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험가동기간의 연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질 20일 → 25일 • 대기 10일 → 25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험가동기간을 연장하여 동 기간안에 적합판정 통보도 동시에 이루어 지도록 조정